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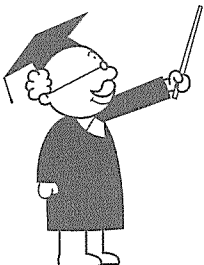
“동물영양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Regulation(EC) No 999/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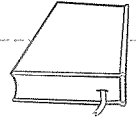
번역_이진주 실장
(주)밀테크

다음 글은 (주)밀테크의 이진주 실장이 번역하여 보내 온 최근 개정된 유럽연합위원회의 “동물영양에 관한 유럽의 회와 위원회의 regulation(EC) No 999/2001”을 요약하여 실은 것입니다. 축산선진국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유 럽의 선진적인 사료관련 법안의 개정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번역자의 말

저희가 번역한 글은 2005년 8월에 발행된 유럽연합공식학회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실린 동물 영양에 관한 단일유럽법의 개정문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사료 첨가를 금지하던 기존 조항 제7장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05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이 비반추동물용 사료에 첨가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유와 달걀 제품을 비롯하여, 동물의 혈액 및 동물성 가수분해단백질 등이 단위동 물 사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92/2005

of 5 August 2005

amending annex IV to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animal nutrition

[동물영양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regulation (EC) No 999/2001의 4번째 개정안]

2001년 5월 22일에 유럽의회와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 (EC) No 999/2001은 전이성 광우병의 예방, 통제, 그리고 근절을 위한 법안으로서, 이 규정의 23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 (1) Regulation(EC) No 999/2001은 동물의 전염성 해면상 뇌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의 급여에 관하여 규정한다.
- (2) 이 규정은 특정 동물성 단백질이 TSE의 전염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할 수 있고, 감염된 단백질 TSE가 사료에서 소량으로나마 검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가축의 사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이 규정은 금지된 동물성 성분의 사료 첨가를 불허용하고 있다.
- (3) 사료의 공식적인 통제를 위한 동물 유래 사료 성분 분석 방법에 관한 2003년 12월 23일자 위원회 지시문서2003/126/EC는 사료의 공식적인 통제를 위해 사료에서 동물성 성분의 존재 유무, 성분 확인 혹은 정량 하는 것은 위원회의 지시 문서에 의거하여 지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연구소(IRMM-JRC)에 의해 실시된

실험실의 숙련도 평가에 의하면, 그 실험실들에서 사료에 포함된 소량의 포유동물 단백질 검출하는 성과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 (4) 실험 성과의 개선으로 인해, 덩이줄기 작물과 근채 작물들에서 골편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과학적 증거가 토양에 존재하는 골편이 이러한 작물들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1995년 10월 발표된 동물 영양 분야에서 공식 감사 기구를 조직하는 원리를 확립하는 의회 지시문서 95/53/EC를 바탕으로 오염된 덩이줄기 작물과 근채 작물들은 폐기 처분하도록 한다. 이 지시 사항이 적절치 않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여 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유럽 회원국에서 덩이줄기 작물과 근채 작물들에서 동물성 성분의 존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5) 2000년 5월 25, 26일, 과학조정위원회SSC는 1998년 10월 22, 23일 회의에서 채택한 반추동물의 가축에서 생산한 가수분해 단백질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와 평가들을 새로이 수정하였다. 유럽 의회의 Regulation (EC) No 1774/2002 에서는 가수분해된 단백질이 안전

유럽의 사료정책

하다고 여겨지는 필요조건들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0월 3일 유럽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건강법에서는 가수분해 단백질 인체 섭취용이 아님을 규정한다. 2004년 5월 1일 이후로 이러한 조항들은 또한 제삼국으로부터 수입된 가수분해 단백질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반추동물의 가축에서 생산한 가수분해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은 더 이상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6) 1999년 9월 17일의 동종 동물의 사료 재활용에 관한 의견과, 2000년 11월 27, 28의 농장 동물에 동물성 단백질 급여를 금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에 관한 평가에서, SSC는 돼지와 가금류와 같은 단위동물의 생산품에서는 TSE의 자연적인 발생을 증거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료 내에 동물의 뼈나 근육조직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단위동물에서 유래된 혈분 및 가수분해 단백질의 이용은 잠재적인 TSE 감염 단백질 통제 조절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위동물에서 유래된 혈분과 가수분해 단백질을 가축들에게 급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풀려야 한다.

(7) 가공 처리된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사료의 운반, 저장 및 포장의 상태는 청결해야 한다.

(8) 실험 연구원의 능력과 훈련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는 공식적인 규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9) 따라서, Regulation (EC) No 999/2001는 상응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실용성이나 명확성을 따져봤을 때, 전체를 개정안 부칙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이 규정에 관한 법령은 식품 및 동물건강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평가와 일치한다.

제 1장

Regulation (EC) No 999/2001에 대한 부칙 IV은 이 규정에 관한 부칙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제 2장

이 규정은 EU의 공식 학회지에 발간된 후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모든 가입국들에게 바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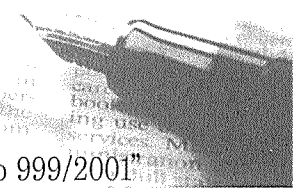
브뤼셀에서 2005년 8월 5일에 작성되었음.

For the Commission

Markos KYPRIANOU

Member of the Commission

=====
다음은 부칙 가운데 눈여겨 볼만 한 대목을 요약했습니다.
=====



부칙 IV

동물 사료 급여

I. 제 7장(1) 제 7장에서 규정된 금지법에 첨가된 내용

제 7장(1)에서 규정된 금지령은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까지 확산될 것이다.:

- (a) 육식 모피 생산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보기의 사료를 가축에게 금지
 - 1)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
 - 2)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젤라틴
 - 3) 혈분
 - 4) 가수분해 단백질
 - 5) 동물성 제2인산칼슘과 제3인산칼슘
 - 6) 1)항에서 5)항까지 나열된 단백질을 내포하는 사료
- (b) 동물성단백질이나 동물성 성분이 있는 사료를 반추동물들에서 급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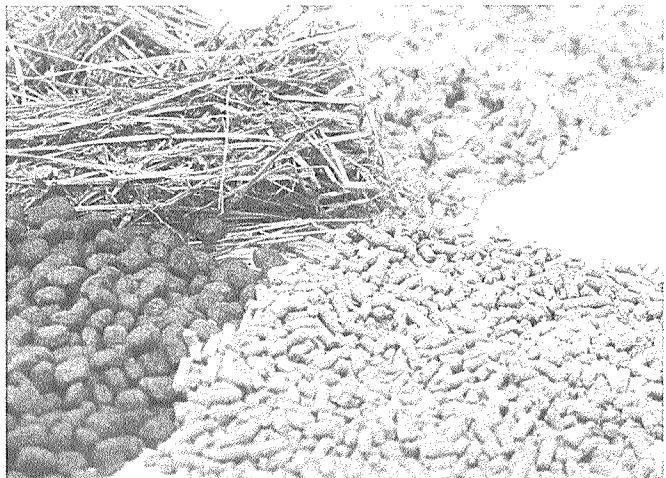
료를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

- 1) 우유, 우유 가공 생산품과 초유
- 2) 달걀과 달걀 가공 생산품
- 3) 단위동물의 젤라틴
- 4) 단위동물의 일부와 반추동물의 가죽이나 피부에서 얻은 가수분해 단백질
- (b) 1), 2), 3)항에서 언급한 단백질을 단위 동물에게 급여하는 것:
 - 1) 어분, B항에서 규정하는 조항들과 일치
 - 2) 제2인산칼슘과 제3인산칼슘, C항에서 규정하는 조항들과 일치
 - 3) 단위 동물에서 얻은 혈액제제 D항에서 규정하는 조항들과 일치
- (c) D항에서 규정하는 조항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단위동물에서 유래한 혈분을 생선에 급여하는 것
- (d) 적절한 위해성 평가가 존재한다면, 고품질의 검출이 있는 생산품을 내포하는 덩이줄기 작물, 근채 작물 등의 사료를 가축들에게 급여하는 것

II. 제 7장(1), (2)에서 규정한 금지령의 완화와 그에 적용하기 위한 조항들.

A. 제7장(1), (2) 에서 규정된 금지령은 다음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1), 2), 3), 4)항에서 언급한 단백질과 이러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



유럽의 사료정책

것은 각 회원국들이 허용할 것이다. 위해성 평가는 적어도 오염의 양과 오염 가능성의 원인 그리고 전염된 물질의 마지막 축적에 대해 계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B. 다음의 조항들은 단위동물에게 A(b)1)항에서 언급한 어분과 어분을 내포하는 사료를 급여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육식 모피 생산 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a) 어분은 물고기 부산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
- (b) 회원국내에서 자유 유통되기 전에, 수입 어분의 위탁 판매품들은 2003/125/EC조항에 의거하여 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될 것이다.
- (c) 어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료는 반추동물에게 급여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적임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생산될 것이다.
- (c) 항의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자가 제조자에게는 어분을 함유한 완전배합 사료의 제조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 적법한 책임자에 의한 등록
 - 단위동물에서만 유지
 - 소유자가 같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료 생산
 - 사료에 내포된 어분은 조단백질이 50%이하인 생산품으로 만든 것
 - 2) 다른 종에게 급여할 어분을 포함하는 사료를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반추동물 사

료는 적법한 책임자의 감독아래 다음의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

- 반추동물용으로 예정된 벌크와 포장 사료는, 저장, 운반, 포장하는 동안에 어분을 포함한 벌크 사료와 벌크 어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보관한다.
- 어분을 내포한 사료의 판매와 어분의 구입, 사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적법한 책임자가 볼 수 있도록 5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 반추동물에게 먹일 예정인 사료는, 어분을 포함한 금지된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한다.
- (d) 어분을 내포하고 있는 사료의 라벨과 관련 서류는 “어분을 포함한 것 반추동물에게 급여하지 못함” 이라는 문구가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 (e) 어분을 포함한 벌크사료는 반추동물 사료 운송과 시간대가 다른 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만일 같은 차량이 반추동물 사료를 운송할 예정이라면,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이는 적법한 책임자의 허가 아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f) 반추동물이 있는 농장에서는 어분을 내포하고 있는 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반추동물이 있는 농장이라도 어분을 내포한 사료가 반추동물에게 급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충분하다면, 적법한 책임자는 반추동물이 있는 농장에 어분을 내포한 사료의 사용과

보관을 허용할 수도 있다.

<중략>

III. 일반적인 충족 조건

A. 이 부칙은 규칙 제 1774/2002 조항에 따라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적용한다.

B. 회원국들은 다음 목록들의 최신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 (a) 제 II부의 D (a)항의 인가에 따라 혈액수집이 승인된 도축장
- (b) 제2 인산칼슘, 제3 인산칼슘, 혈액제품 그리고 혈분의 생산을 위해 승인된 가공 공장
- (c) 자가 제조자를 제외하고 사료에 포함된 어분과 (b)항에 명시된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를 생산하도록 허가된 모든 시설로, 제 II부의 B (c), (a)항 그리고 D(c)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따라 운영되는 시설물들

C. (a) 어분을 제외한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과 이 같은 단백질을 포함한 사료,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선탄 등은 그들만을 위한 특정 시설에 저장되고 운송되어야 한다. 저장 또는 운송수단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적법한 감독자의 감독에 따라 청소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b) 제 II부의 A(b)(i)항에 언급된 어분, 제 II부의

A(b)(ii)항에 언급된 제 3인산칼슘, 제 II부의 A(b)(iii)항에 언급된 혈액제품, A(c)항에 언급된 혈분을 저장하거나 운송할 때에는 지정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c) (b)항의 예외 조항으로:

- (i) 같은 종류의 단백질 사료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데 창고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ii) 저장시설과 차량은 적법한 감독자의 감독에 따라 청소를 한 후 검사를 마치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iii) 어분의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은 해당 회사가 교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가지고 적법한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다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방역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

- 운송된 원료와 운송차량의 청소에 관한 기록
- 어분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한 운송된 원료 사료의 정기적 시료 채취 및 시료 분석

적법한 감독자는 위에 언급된 방역시스템이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석 검사를 자주 실행해야 한다.

<하략> ㉟

